

이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소관부서 : 행정지원과

제정 1996. 3. 6 규칙 제 81호
개정 1998. 10. 19 규칙 제136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 2001. 3. 7 규칙 제213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개정 2001. 12. 6 규칙 제234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개정 2002. 7. 15 규칙 제242호
개정 2009. 12. 10 규칙 제407호
전부개정 2020. 11. 13 규칙 제688호
일부개정 2022. 9. 30 규칙 제736호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이천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업무처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결정방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30>

제2조(권한대행)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부시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1. 결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 시장이 그 직을 가지고 시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시장이 시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할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3조(법정대리) ① 시장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시장,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부시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국

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국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국의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담당관·과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담당관·과의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 또는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⑥ 읍·면·동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읍·면·동의 직제 순서에 따라 읍·면은 부읍장·부면장, 동은 사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부읍장·부면장, 사무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 또는 그 다음 하위직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팀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서장이 지정하는 소속 직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리 지정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 할 수 없다.

제5조(책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부칙 <2020·11·13 규칙 제688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9·30 규칙 제736호,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

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직무대리 명령서

1. 직무대리 직명:
2. 직무대리자의 직위와 성명:
3. 직무대리 사유:
4. 직무대리기간:

「이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대리를 명함.

년 월 일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